

1. 개정이유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정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계약시장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를 일몰하는 내용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943호, 2026. 9. 15.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계약시장제도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기준, 소규모 설비 및 통합사업자 기준, 보급목표 및 의무량 설정 방식, 계약시장관리 기관 지정 절차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약시장제도의 입찰 공고 및 낙찰자 결정 등 계약시장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안 제2조의7부터 제2조의9까지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계약 공고를 할 때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 상한가격, 입찰평가 등을 포함하고 입찰 평가기준을 정할 때 가격 요소뿐만 아니라 주민수용성, 국내 산업 기여도,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 등 비가격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며, 입찰의 상한가격은 보급 목표와 설비의 적정 투자 및 운영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함.

나. 소규모설비 기준 및 통합사업자 요건 규정(안 제2조의10 및 제2조의11 신설)

소규모설비를 발전설비용량이 500킬로와트 이하인 재생에너지 설비로 정의하고, 다수의 소규모설비를 모아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통합사업자)으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마련함.

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목표 및 의무량 설정·운영 절차 구체화

(안 제2조의12 및 제2조의13 신설)

목표관리대상자별 연도별 보급목표 기준을 매년 9월 30일까지 통보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가 목표를 제출하여 협의 후 확정하도록 하며, 보급의무자별로 배분된 보급의무량을 매년 9월 30일까지 해당 의무자에게 통보하고 공고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라. 계약시장관리기관 지정 절차 및 발전정보인증서 발급 기준 마련

(안 제2조의14 및 제2조의15 신설)

계약시장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정관, 운영계획서, 인력 및 시설, 현황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계약시장관리기관은 발전정보인증서 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생에너지원, 설비용량 및 발전량 등을 확인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함.

마.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일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의무이행 충당 방법(안 제20조 신설)

공급의무자가 의무이행에 충당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공급의무자가 자체 건설한 설비에서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를 의무이행에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0.~00.)

3) 행정규제 : 규제없음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7부터 제2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7(계약 공고 및 낙찰자 결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14제2항에 따라 계약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 및 에너지원별 용량
2. 공고의 시기·방법 및 입찰 일정
3. 입찰 참여자격 및 참여 방법
4. 상한가격 또는 그 산정방식
5. 입찰의 평가기준·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6. 그 밖에 계약시장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5호의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입찰가격 등 가격 요소와 주민수용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기여도,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 등 비가격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입찰에 참여한 자를 제1항제5호의 평가기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원별 공고 용량의 범위에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부터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 공고, 평가 및 낙찰자 결

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8(상한가격의 산정 및 비용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제도에 따른 입찰의 상한이 되는 가격(이하 “상한가격”이라 한다)을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 재생에너지 설비의 적정한 투자 비용 및 운영비용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원별로 산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한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설비의 투자·운영비용 및 적정 수익률 등을 평가(이하 “비용평가”라 한다)하는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에게 비용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한가격의 산정방법, 비용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의 요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9(계약시장제도의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14제2항 후단에 따라 5년 단위로 산정하여 제시한 전망치에 대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변경, 전력계통 여건, 계약 수요 및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5년 단위 기간 중 남은 기간의 전망치를 재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의14제3항에 따른 별도의 계약시장제도(이하 “별도 계약시장”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재생에너지의 종류, 입찰 물량, 입찰 기준 및 그 밖의 구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시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 제12조의19제2항에 따른 계약시장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의10(소규모설비 등) 법 제12조의14제3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설비”란 발전설비용량이 500킬

로와트 이하인 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제2조의11(통합사업자의 참여자격 등) ① 법 제12조의14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12조의14제5항에 따라 지정된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을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법 제12조의14제5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업 개발, 계약시장 입찰 대행, 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유지보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 신용도 및 자본금 등을 보유할 것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관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 기준과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의 지정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12(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대상자를 지정하거나 보급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발전설비 보유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14제2항 후단에 따른 전망치, 목표관리대상자가 보유한 발전설비의 총 설비용량 등을 고려하여 목표관리대상자별 다음 연도의 보급목표의 기준을 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해당 목표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목표관리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준에 따라 보급목표를 설정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목표관리대상자와의 협의를 거쳐 보급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통보한다. 이 경우 보급목표를 제

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확정하며, 목표관리대상자가 제출기한까지 보급목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표관리대상자와 협의를 거쳐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보급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보급목표는 조정한 연도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2조의14제2항 후단에 따른 전망치가 조정된 경우
2. 발전설비의 신설·폐지 또는 양도·양수 등으로 목표관리대상자가 보유한 발전설비의 총 설비용량이 변동된 경우
3. 전력수급 여건, 재생에너지 시장 상황 등이 현저히 변동되어 확정된 보급목표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목표관리대상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를 소명하여 보급목표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⑤ 보급목표의 이행은 목표관리대상자가 직접 설치한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관리대상자가 출자한 법인이 설치한 재생에너지 설비(출자 지분에 해당하는 설비용량으로 한정한다)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를 제공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목표관리대상자는 법 제12조의15제2항 전단에 따른 전년도 보급목표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급목표의 설정·조정 및 실적의 인정기준, 그 밖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관리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13(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량의 공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16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급의무량을 보급의무

자가 보유한 발전설비의 총 설비용량,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급의무자별로 배분하고, 다음 연도의 보급의무자별 보급의무량을 매년 9월 30일까지 해당 보급의무자에게 통보하고 공고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급의무자와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정한 보급의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보급의무량은 조정한 연도부터 적용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정한 보급의무량을 지체 없이 해당 의무자에게 통보하고 공고해야 한다.

1. 법 제12조의14제2항 후단에 따른 전망치가 조정된 경우
2. 발전설비의 신설·폐지 또는 양도·양수 등으로 보급의무자가 보유한 발전설비의 총 설비용량이 변동된 경우
3. 보급의무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를 소명하여 보급의무량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③ 보급의무의 이행은 보급의무자가 직접 설치한 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보급의무자가 출자한 법인이 설치한 재생에너지 설비(출자 지분에 해당하는 설비용량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④ 보급의무자는 전년도 보급의무의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급의무량의 산정·배분 기준, 이행실적의 인정 기준 및 확인 방법, 그 밖에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14(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19제1항에 따라 계약시장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계약시장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계약시장관리기관 운영계획서
3.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현황에 관한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영 제18조의27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관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계약시장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제2조의15(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 방법 등) ① 계약시장관리기관은 법 제12조의20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재생에너지원
2. 재생에너지 설비의 용량 및 발전량
3.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4.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일 및 재생에너지 전력의 공급기간
5. 그 밖에 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계약시장관리기관은 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전정보인증서의 신청, 발급, 취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계약시장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의무이행 충당 등) ① 법 제12조의5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구매한 경우"란 공급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급인증서를 구매한 경우를 말한다.

1. 공급인증기관의 공고를 통해 선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한 경우
 2.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한 경우
 3. 공급인증기관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개설한 현물시장을 통해 구매한 경우
- ② 공급의무자는 자체 건설한 설비에서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를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에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는 해당 설비에 대한 공급인증서 최초 발급개시일이 속한 월부터 20년까지 발급된 공급인증서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계약시장관리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신청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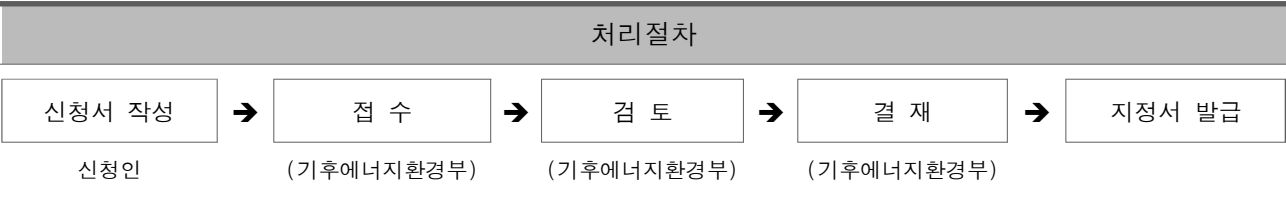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4제1항에 따라 계약시장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계약시장관리기관 운영계획서 1부 3.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현황에 관한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 호

계약시장관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지 정 일:
5. 지정번호:
6. 업무범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시장관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7(계약 공고 및 낙찰자 결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14제2항에 따라 계약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u> <u>1.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 및 에너지원별 용량</u> <u>2. 공고의 시기·방법 및 입찰 일정</u> <u>3. 입찰 참여자격 및 참여 방법</u> <u>4. 상한가격 또는 그 산정방식</u> <u>5. 입찰의 평가기준·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u> <u>6. 그 밖에 계약시장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5호의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입찰가격 등 가격 요소와 주민수용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기여도,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 등 비가격 요소를</u>		

<신 설>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입찰에 참여한 자를 제1항제5호의 평가기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원별 공고 용량의 범위에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부터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 공고,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8(상한가격의 산정 및 비용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제도에 따른 입찰의 상한이 되는 가격(이하 "상한가격"이라 한다)을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 재생에너지 설비의 적정한 투자비용 및 운영비용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원별로 산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한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설비의

<신 설>

투자·운영비용 및 적정 수익률 등을 평가(이하 “비용평가”라 한다)하는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에게 비용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한 가격의 산정방법, 비용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의 요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9(계약시장제도의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14제2항 후단에 따라 5년 단위로 산정하여 제시한 전망치에 대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변경, 전력계통 여건, 계약 수요 및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5년 단위 기간 중 남은 기간의 전망치를 재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의14제3항에 따른 별도의 계약시장제도(이하 “별

<신 설>

<신 설>

도 계약시장"이라 한다)의 대상
이 되는 재생에너지의 종류, 입
찰 물량, 입찰 기준 및 그 밖의
구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시장제도의 운영
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 제12
조의19제2항에 따른 계약시장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의10(소규모설비 등) 법 제1
2조의14제3항제1호에서 "기후
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
정 규모 이하의 설비"란 발전설
비용량이 500킬로와트 이하인
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제2조의11(통합사업자의 참여자
격 등) ① 법 제12조의14제4항
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12조의1
4제5항에 따라 지정된 재생에너
지 종합서비스기업을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법 제12조의14제5항에 따

<신 설>

른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업 개
발, 계약시장 입찰 대행, 재생
에너지 설비의 운영·유지보
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
신용도 및 자본금 등을 보유
할 것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관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
기준과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
기업의 지정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12(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목표관
리대상자를 지정하거나 보급목
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 또는 사
업자에게 발전설비 보유현황 등
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14제2항 후단에 따른 전망치, 목표관리대상자가 보유한 발전설비의 총 설비용량 등을 고려하여 목표관리대상자별 다음 연도의 보급목표의 기준을 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해당 목표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목표관리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준에 따라 보급목표를 설정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목표관리대상자와의 협의를 거쳐 보급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통보한다. 이 경우 보급목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확정하며, 목표관리대상자가 제출기한까지 보급목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표관리대상자와 협의를 거쳐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보급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보급목표는 조정한 연도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2조의14제2항 후단에 따른 전망치가 조정된 경우

2. 발전설비의 신설·폐지 또는 양도·양수 등으로 목표관리 대상자가 보유한 발전설비의 총 설비용량이 변동된 경우

3. 전력수급 여건, 재생에너지 시장 상황 등이 현저히 변동되어 확정된 보급목표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목표관리대상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를 소명하여 보급목표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⑤ 보급목표의 이행은 목표관리 대상자가 직접 설치한 재생에너지 설비, 목표관리대상자가 출

<신 설>

자한 법인이 설치한 재생에너지 설비(출자 지분에 해당하는 설비용량으로 한정한다)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를 제공하는 등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목표관리대상자는 법 제12조의15제2항 전단에 따른 전년도 보급목표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급목표의 설정·조정 및 실적의 인정기준, 그 밖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관리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13(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의무량의 공고 등) ①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16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급의무량을 보급의무자가 보유한 발전설비의 총 설비용량, 재생에너지

지 설비의 보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급의무자별로 배분하고, 다음 연도의 보급의무자별 보급의무량을 매년 9월 30일까지 해당 보급의무자에게 통보하고 공고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급의무자와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정한 보급의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보급의무량은 조정한 연도부터 적용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정한 보급의무량을 지체없이 해당 의무자에게 통보하고 공고해야 한다.

1. 법 제12조의14제2항 후단에 따른 전망치가 조정된 경우
2. 발전설비의 신설·폐지 또는 양도·양수 등으로 보급의무자가 보유한 발전설비의 총 설비용량이 변동된 경우
3. 보급의무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를 소명하여 보급의무량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

<신 설>

오

③ 보급의무의 이행은 보급의무자가 직접 설치한 재생에너지 설비 또는 보급의무자가 출자한 법인이 설치한 재생에너지 설비(출자 지분에 해당하는 설비용량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④ 보급의무자는 전년도 보급의무의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급의무량의 산정·배분 기준, 이행실적의 인정 기준 및 확인 방법, 그 밖에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14(계약시장관리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19제1항에 따라 계약시장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계약시장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계약시장관리기관 운영계획
서

3.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현황에 관한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계약시장관리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영 제18조의27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2항에 따른 결정에 필요한 경우
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하
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
약시장관리기관을 지정한 때에
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

<신 설>

의 계약시장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제2조의15(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 방법 등) ① 계약시장관리기관은 법 제12조의20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재생에너지원
2. 재생에너지 설비의 용량 및 발전량
3.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4.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일 및 재생에너지 전력의 공급기간
5. 그 밖에 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계약시장관리기관은 발전정보인증서의 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전정보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전

<신 설>

정보인증서의 신청, 발급, 취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계약시장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의무 이행 충당 등) ① 법 제12조의5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구매한 경우"란 공급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급인증서를 구매한 경우를 말한다.

1. 공급인증기관의 공고를 통해 선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한 경우

2.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한 경우

3. 공급인증기관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개설한 현물시장을 통해 구매한 경우

② 공급의무자는 자체 건설한 설비에서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를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에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는 해당 설비에 대한 공급인증서 최초 발급개시일이 속한 월부터 20년까지 발급된 공급인증서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